

**「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<b>제6조(특별지원부문)</b></p> <p>① ( 생 략 )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<u>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</u> 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 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)의 <u>25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p> <p>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<u>5억원</u>(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) 이내로 배정한다.</p> <p>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<u>25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 과할 수 없다.</p> <p>⑤ ~ ⑥ ( 생 략 )</p> <p>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<u>25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<u>최종 배정월</u>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 실적에 대해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.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<u>25%</u>를 초과 할 수 없다.</p> <p align="right">부 칙 &lt;2019. 1. 30.&gt;</p> <p><b>제1조(시행일)</b> 이 기준은 2019년 <u>3월 1일</u>부터 시행한다.</p> <p align="center">&lt; 신 설 &gt;</p>	<p><b>제6조(특별지원부문)</b></p> <p>① ( 현행과 같음 )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<u>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</u> 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 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)의 <u>50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p> <p>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<u>10억원</u>(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) 이내 로 배정한다.</p> <p>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<u>50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 과할 수 없다.</p> <p>⑤ ~ ⑥ ( 현행과 같음 )</p> <p>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<u>50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<u>경우</u>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.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 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<u>50%</u>를 초과할 수 없 다.</p> <p align="right">부 칙 &lt;2019. 8. 30.&gt;</p> <p><b>제1조(시행일)</b> 이 기준은 2019년 <u>9월 1일</u>부터 시행한다.</p> <p><b>제2조(경과조치)</b>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</p>	<p>- 특별지원한도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비율 상향 조정</p> <p>- 지원비율 변경을 반영하여 업체당 배정한도 상향 조정</p> <p>- 지원비율 변경 반영</p> <p>- 지원비율 변경 반영 및 조문 명확화</p> <p>- 시행일 명시</p> <p>- 부칙 신설</p>